

의안 번호	2418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5. 2.(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5. 2.(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5. 20.(화)

2. 제안설명 요지 (보건소장 이현주)

가. 제안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징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명과 조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 위임 근거 조문 명시(안 제1조)
-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위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

다.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제7조의7제1항 및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징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명과 조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